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70
----------	-----

2023. 4. 21.(수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최정훈 의원 등 7인

나. 제출일자 : 2023년 4월 11일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4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2023년 4월 21일

-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최정훈 의원)

가. 제안사유

○ 도민감사관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, 도에서 실시하는 시·군 감사 시기인 3년 주기와 동일하게 맞추고자 도민감사관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도민감사관의 임기를 3년으로 함(안 제5조제1항)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서정호)

○ 금번 개정조례안은 도민감사관 임기는 2년이며, 시군 종합감사 주기는 3년으로, 도민감사관이 시군 종합감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도민감사관의 임기를 3년으로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2년”을 “3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임기 등) ①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<u>2년</u> 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	제5조(임기 등) ①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<u>3년</u> 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제1호

○ 사 유

- 도민감사관 임기는 2년으로 시·군 감사 기간 3년과는 일치하지 않음. 따라서 도민감사관 임기를 3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임.
- 이 조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도민감사관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음.